#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위험성평가 실시지침

제정 2023. 12. 12. 지침 제9호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실시 지침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(이하"공단"이라 한다)과 관련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운전상의 문제점을 발견, 평가, 개선함으로서 귀중한 인명손실을 포함한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위험성평가"란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- 2. "유해·위험요인"이란 유해·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 나 속성을 말한다.
- 3. "유해·위험요인 파악"이란 유해 및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.
- 4. "위험성"이란 유해·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.
- 5. "위험성 추정"이란 유해·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위험성 결정"이란 유해·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"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기록"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.
- 9. 그 밖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적용범위) 본 실시 지침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,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, 절차,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제2장 실시 체제

제4조(조직의 구성)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<표1>과 같이 한다.

# <표1> 위험성평가 조직



**제5조(역할과 책임)**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〈표2〉와 같이 한다. 〈표2〉 조직의 역할과 책임

조 직	역할과 책임(권한)	
안전보건관리 책임자 (이사장)	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○ 사업주의 의지 구현 -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승인 -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-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과 역할 부여 ○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	
위험성평가 업무지원 (안전 및 보건관리자)	위험성평가 업무지원         ○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제정 및 개정 지원         ○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지원         ○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 지원         ○ 위험성평가 업무 진행 관리 지원         ○ 사업장 순회 점검 사항 포함 관리	
위험성평가 담당자 (각 부서 안전담당자)	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○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○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좌 ○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○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○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(안전, 보건 관리자의 사업장 순회 점검 사항 포함)	
관리감독자 (각 부서 부서장 및 사업장 관리감독자)	<u>위험성평가 실시</u> ○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○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○ 위험성평가 실시시기, 절차와 내용 ○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	
근로자 (현업업무 근로자)	<u>위험성평가 참여</u> ○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할 경우 ○ 담당업무의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○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	

### 제3장 구분 및 시기

**제6조(위험성평가 구분)**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, 정기평가, 상시평가로 구분 하여 실시하도록 한다.

#### 제7조(실시시기)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최초 위험성평가: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
- ② 정기 위험성평가: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(1회/년)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.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.
- 1. 기계·기구, 설비등의 기관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
- 2.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·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
- 3. 안전·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
- 4.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
- ③ 수시 위험성평가: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
- 에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,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시평가
- 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
- 1.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·이전·변경 또는 해체
- 2. 기계·기구. 설비.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- 3.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(주기적·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)
- 4.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- 5.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(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발생
- 6.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- ④ 상시 위험성평가: 최초 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

## 제4장 위험성평가

- 제8조(평가대상) 근로자에게 안전·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.
  - 1. 공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
  - 2. 공단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
  - 3.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(수리 또는 정비 등)
  - 4.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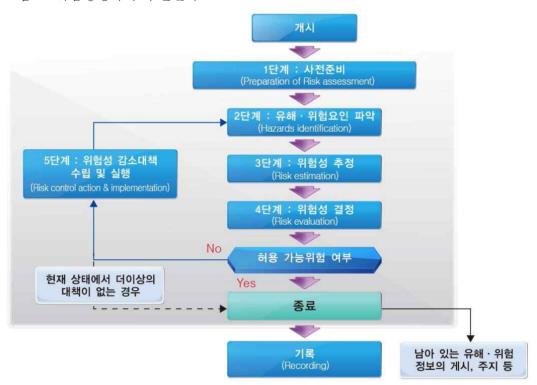
#### 제9조(실시방법)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

- 1. 사업주(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)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.
- 2.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을 구축한다.
- 3.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, 위험

성의 추정·결정,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·실행을 하게 한다.

- 4.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.
- 5. 기계·기구,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·기구,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.
- 6.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.
-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·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.
- 제10조(추진절차) 위험성평가 절차는 <그림1>과 같이 한다.

<그림1>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



- ① 1단계: 사전준비(평가대상 작업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)
- 정확한 작업의 분류가 중요, 작업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이 결정되면 평가대 상 및 범위를 확정
-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
- ② 2단계: 유해·위험요인 파악(도출)
- 가장 중요한 단계, 작업별 유해·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
- ③ 3단계: 위험성 추정
- 유해·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,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
-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<표3>과 중대성<표4>을 곱하여 산출

위험성(Risk) = 사고발생의 가능성 × 사고결과의 중대성

#### <표3> 가능성(빈도)

구분	가능성		내 <del>용</del>
상	높음	3	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
중	보통	2	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하	낮음	1	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

#### <표4> 중대성(강도)

구분	가능성		내 <del>용</del>
대	높음	3	사망·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 질병 초래 위험
중	보통	2	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
소	낮음	1	아차사고, 무상해,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초래 위험

#### <표5> 중대성(강도)

중대성(강도) 가능성(빈도)	대(3)	중(2)	소(1)
상(3)	9	6	3
중(2)	6	4	2
하(1)	3	2	1

- ④ 4단계: 위험성 결정
- 위험성 수준은 유해·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높음 (6~9), 보통(3~4), 낮음(1~2)으로 구분
-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<표6> 위험성 결정

위험성 크기		관리기준	개선방법
6 ~ 9	높음	즉시개선	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
3 ~ 4	보통	개선	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
1 ~ 2	낮음	현상유지	근로자에게 유해·위험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필요한 상태

- ⑤ 5단계: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- 위험성 크기가 높음일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,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·실행
- 위험성 크기가 낮은 경우에는 현 작업상태를 유지하거나, 게시, 주지, 교육 등의 방법으로 조치
- ⑥ 6단계: 결과 기록 및 보존 [법정기한: 3년]
-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 및 보존
- 기록한 위험성평가표는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

### 제5장 위험성평가 관리

- 제11조(주지방법) 사업주(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)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,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등에서 홍보·주지시키고, 읽을 수 있도록 공지한다.
- 제12조(유의사항)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 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.

#### [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]

- 1.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
- 2. 작업자의 판단,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,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
- 3. 작업성·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,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
- 4.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,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.
  - (기술면, 비용면,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)
-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.
-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기록의 작성·관리)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
  -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,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.
- 제14조(검토 및 수정) ①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효과적·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야 한다.
  - 도입목적, 공단의 안전보건수준의 향상, 사회의 가치관, 사회의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경우
  - ② 실시지침의 수정 검토는 관리감독자, 근로자,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으로부터의 의견,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·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